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(이수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15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7. 24.

발 의 자 : 이수진 · 서미화 · 염태영
백혜련 · 전종덕 · 허성무
김정호 · 민병덕 · 이개호
백선희 · 전진숙 · 박선원
서영교 · 최혁진 의원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「고용보험법」 제77조의2에 따른 예술인과 제77조의6에 따른
노무제공자는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
한 법률」 제21조에 근거하여 국가로부터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
(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)받고 있으나, 건강보험료는 별도의 지
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.

이에 국가가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
있는 법적 근거와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지원 대상자들의 건강보험료
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(안 제75조의2 신설).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5조의2(보험료의 지원) ① 국가는 「고용보험법」 제77조의2 및 같은 법 제77조의6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21조를 준용하여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는 자일 것
 2. 재산 및 「소득세법」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
- ② 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료의 지원수준,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75조의2(보험료의 지원) ① 국가는 「고용보험법」 제77조의 2 및 같은 법 제77조의6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u> <u>1.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21조를 준용하여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는 자일 것</u> <u>2. 재산 및 「소득세법」 제4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</u> <u>② 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료의 지원수준,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